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122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진

담당변호사 하영록

피고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김현중, 조정훈

변론 종결2024. 10. 16.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 가. 피고 B와 D[E생. 주소: 태백시 F아파트, G호]가 2022. 10. 21. 한 영업양도계약 및 2022. 11. 4.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1)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44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가 2022. 10. 21. 한 영업양도계약 및 2022. 11. 4.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양도계약을 11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D는 'H'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영업으로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H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줄여 부른다)은 세탁업 등을 영업으로 하여 2023. 6. 2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법률관계

- 1) 원고는 D 명의의 계좌로 2018. 12. 31. 2,000만 원, 2019. 1. 10.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2)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부터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명의의 계좌로 2021. 9. 13. 2,000만 원, 2021. 9. 14. 1,190만 원, 2022. 6. 13. 1,560만 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3) 원고는 2022. 7.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D를 상대로 'I은 D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송금액은 모두 원고가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송금액 합계 11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대로의 지급명령을 하였다(위 법원 2022차29 사건).
- 4) D는 2022. 8. 23.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이 법원에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이 법원 2022가단1201 사건).

5) 이 법원은 2023. 5. 3.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D는 원고에게 11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2가단1201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2023. 5. 23. 확정되었다.

다. D와 피고들의 거래

1) D는 2022. 9. 6. 피고 B에게 'H'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세탁업 영업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를 대금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는 2022. 11. 4.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2023. 7. 26.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영업과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것은 D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은 피보전채권의 원금인 11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D에 대하여 관련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제1의 나.항 1), 2)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와 D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营业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营业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营业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营业양도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营业과 이 사건 자동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营业의 가액이 D와 피고가 이 사건 营业양도계약을 하면서 정한 대금인 5,000만 원[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이 사건 营业을 5억 4,000만 원에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营业의 가액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2) 이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증언 3) 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법원은 원고 대리인에게 이 사건 营业의 가액에 관하여 증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증인 J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증명활동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달리 이 사건 营业의 객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D와 피고가 이 사건 营业양도계약을 하면서 정한 대금이 부당히 싼 금액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营业 가액도 위 대금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营业의 가액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자동차 가액의 합계가 1,944만 원가량인 사실, D는 이 사건 营业양도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관련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원금만 117,500,000원이고, K조합에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 B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게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이 사건 영업과 그 영업에 사용할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D와 피고들의 사해의사 가) D와 피고들의 사해의사 추정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전부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영업과 이 사건 자동차는 사실상 D가 가진 재산 전부로서 이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 약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D는 H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 B는 H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와 피고 B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나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이 D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것처럼 D는 이 사건 영업과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영업양도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营业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D가 이 사건 영업과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앞으로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营业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이 사건營業을 위하여 인수하였던 사업체인 H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營業의 영업재산(한편, 이 사건 자동차 또한 이 사건營業을 위한 영업재산의 하나로 보인다) 및 영업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D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서 이 사건 영업의 양도대금은 5,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년경의 가액 합계가 1,944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후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중 누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취득한 목적물이 이미 전득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무가 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수익자, 전득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와 전득자는 각자 전액에 대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다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고(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방으로부터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구상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다른 일방의 채권자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도 소멸한다)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이 사건 자동차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44만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진영현

별지

- 1) 아래 이유 제3의 나. 3)항에서 보는 것처럼 영업양도계약 및 2022. 11. 4.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양도계약의 가액 합계가 69,440,000원으로서 117,500,000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이와 같이 위 각 양도계약의 전부 취소를 명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2)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2024. 3. 14.자 준비서면 10쪽
- 3) 한편, 증인 J는 이 법원에서 '2018년경 D에게 이 사건 영업을 5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일까지 약 4년이 지난 점, J가 D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한 때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의 거래처 등이 같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영업에 사용되는 기계 등이 시간의 경과로 노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J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5억 2,000만 원가량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